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공통)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현행화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 반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에 따른 증상 모니터링 기간 10일로 변경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 2.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 3. 격리대상 수험자의 이동시 방역 조치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1. 특별한 상황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 4. 격리자등의 이동시 방역 조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의 목차 구성 변경 및 문단 구성 변경 외출허용 절차 추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시험장 방역 조치사항을 격리자등의 방역관리로 통합
I. 개요			
1	1. 목 적 ○ 본 지침은 시험개최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최기관에서 필요한 방역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제시 ○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 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함 - 또한 시험 주최 기관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1. 목 적 ○ 시험개최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최기관에서 필요한 방역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제시	문단 구성 변경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1	2. 기본방향 □ 일반적 상황 ○ (사전 구성)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사전 구성 ○ (기본방역) 수험자 시험관리 시 필요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기인지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 수립 및 운영 - 시험 참여자, 감독관, 관리자 등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황별(사전준비, 시험당일, 시험종료 후), 장소별 방역사항 관리*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험장구성, 예방교육, 환경(위생, 소독, 환기)관리, 발열 확인 등 ○ (시험 연기, 취소) ①시험 주최 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 곤란 ②폐쇄되고 협소한 공간의 시험장인 경우, 연기·취소 가능 □ 특별한 상황 ○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응시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응시 가능 * 시험 주최기관은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수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시험대상 및 장소: 전국단위→질병관리청, 지역단위→시·도 및 관할 보건소 ○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의 경우, 시험 응시조건으로 PCR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수 없음 ○ 주최기관은 ① 확진/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가능 계획 사전 공고 ② 시험 응시 확진/자가격리 수험자의 사전 알릴 의무* 안내 ③ 시험응시 자가격리 수험자 준수사항(붙임 7) 공고 * 확진/격리 통보 받는 즉시 ①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릴 ② 시험 주최기관에 확진/자가격리 통보 사실 알릴	1. 목 적 ○ 시험개최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최기관에서 필요한 방역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제시 2. 기본방향 ○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 본 지침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자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 가능 - 또한 시험 주최기관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기본조치) 주최기관은 수험자의 시험관리 시 필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인지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사전준비, 시험당일, 시험종료 후), 장소별 방역사항 관리 및 관리체계 구성 ○ (특별조치) 격리대상(확진자 포함)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더불어 특별 조치사항(외출 허용, 격리자등 시험장 방역, 이동)을 추가하여 운영 - 추가 조치사항 외에는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을 따름 ○ (시험 연기, 취소) 시험 주최 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 곤란한 경우 시험 연기, 취소 가능	문단 구성 변경 시험 연기, 취소가 가능한 경우 범위 축소 기본조치, 특별조치로 기본방향에 간소화한 설명 추가
II.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2	1.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험관리자, 수험자 등 감염병 예방, 시험장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험장 ⑤감염관리총괄담당, 시험실 별 ⑥감염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 ⑥감염관리전담자(증상 모니터링, 신고접수 및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지정으로 시험장 관리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수험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주최기관↔시·도↔관할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 주최기관은 시험 시행사항*에 대해 시·도 및 관할 보건소에 사전 보고 * 시험명, 응시인원, 시험장소, 감염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	1. 주최기관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관리체계 구성) ⑤시험관리자, 수험자 등 감염병 예방, 시험장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⑥시험장방역담당자 지정 - (감염관리총괄) 시험장 별 지정하여 수험생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방문 등 연계 조치 권고,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 (감염관리책임자) 시험실 별 지정(감독관 등)하여 유증상자 발생시 감염관리총괄에 연락 등 ○ (협조체계 구성)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수험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주최기관↔시·도↔관할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문단구성 변경 및 시험방역 담당자의 역할 명시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전파경로 :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이며,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①비말(침방울), ②표면접촉, ③공기 등을 통해 전파 가능 ① (비말)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②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 ③ (공기)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 제한적 전파 *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 자료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자료출처: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전파경로 :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①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건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②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③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 및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으로 위치 이동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3	□ 사전 준비사항 ○ 감염예방 교육·홍보(붙임 1~4) - 시험관리자, 운영요원 등 관련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수행 - 시험장 내 주요장소에 예방 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법 등) 등 홍보자료* 부착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내 게시된 코로나19 홍보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70% 에탄올),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 종이타월(휴지 등)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 -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소독)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대상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 출입장소는 최소 일 1회 이상 하되 빈번히 소독 * 손잡이(문),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등 · (환기) 시험실 주기적인 환기 수행 - 시험 시행 사전에 시험장 시설 대상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소독 수행 ○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 - (사전 교육)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시험관리자, 운영요원 등 책임자 업무분장 및 사전 교육 철저 - (유증상자 확인) 수험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사전 확인	□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홍보(붙임 1~4) ○ 수험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관리자 등 관련자 대상 코로나19 특성,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및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 수행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감염관리총괄, 감염관리책임자, 운영요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 책임감 부여 및 사전 교육 철저 ○ 시험장 내 주요장소에 예방 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법 등) 등 홍보자료* 부착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내 게시된 코로나19 홍보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소독)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실시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표면* 대상 일 1회 이상 소독 * 손잡이(문),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등 - 출입장소(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는 최소 일 1회 이상 하되 빈번히 소독 - 시험 시행 사전에 시험장 시설 대상 소독 수행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문단구성 변경 -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홍보 - 환경 위생관리(소독, 환기, 폐기) - 시설 및 물품 확보 - 고지사항 안내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3	-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소독)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대상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 출입장소는 최소 일 1회 이상 하되 빈번히 소독 * 손잡이(문),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등 · (환기) 시험실 주기적인 환기 수행 - 시험 시행 사전에 시험장 시설 대상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소독 수행	○ (소독)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실시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표면* 대상 일 1회 이상 소독 * 손잡이(문),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등 - 출입장소(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는 최소 일 1회 이상 하되 빈번히 소독 - 시험 시행 사전에 시험장 시설 대상 소독 수행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 (환기) 시험장은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 환기 - 화장실은 상시 외부 환기 유지 - 냉·난방기, 공기정정기는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고 세기는 가능한 낮춰서 사용 * 세부사항은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내 VII. 환경관리(소독, 환기) 참고	환기 관련 현행 및 시험장 소독시 '전문소독업체'로 한정된 것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문구 삭제(이하 동일)
4	○ 시설 및 물품 확보 - (격리공간) 유증상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격리공간 확보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별도공간) 유증상자의 별도 시험응시가 가능한 경우,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 *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시험관리자(감독관)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방역물품)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시설 및 물품 확보 ○ (관리대기실) 유증상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격리공간* 확보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별도시험실) 유증상자의 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경우,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 ○ (방역물품)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위생물품)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 종이타월(휴지 등)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	격리공간→관리대기실, 별도공간→별도시험실 등 용어 명확화 문단구성 변경 '위생물품' 문단 위치 이동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4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① (시험관리자, 운영요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② (수험자)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사전 고지사항 > ① (시험관리자,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④ (수험자, 시험관리자, 운영요원 등)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고지	□ 고지사항 안내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가 시험장 출입 전 알 수 있도록 시험공고 등을 통해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사전 안내 <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 - 시험장에서 전원 마스크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철저한 손위생 안내 - 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수험자) -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안내	사전안내 내용과 사전 고지사항을 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사전 고지사항으로 변경
5	○ 출입 관리 - (운영요원)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외부인 출입 통제,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u>감염관리담당요원</u>* 배치 * (출입구 요원) 출입 가능 시간 확대 및 출입 시 수험자 간 간격 유지 입장 담당 * (유증상자 관리대기실 요원) 유증상자 관리 담당으로, 개인보호구(마스크(KF94 등급이상),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착용 - (수험자) 마스크* 착용, 손위생,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 후 입장	○ (출입관리) 관계자 외 출입 통제하고 손소독 및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장 - (운영요원)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외부인 출입 통제,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 배치 * 유증상자관리 담당으로 개인보호구(마스크(KF94 등급이상), 일회용 장갑, 필요시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비닐가운 포함)) 착용 - (수험자) 마스크* 착용, 손위생, <u>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무 확인 후 입장</u>	현 방역지침 반영하여 ‘필요시’ 문구 추가하여 상황에 맞게 안면보호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 시험장 입장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이란 문구로 의미 확대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5	○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 관리대기실 운영 ① 출입 관리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②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재확인 시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시험 진행요원은 개인보호구 착용)을 별도로 배치하여 유증상자 시험 누락 방지 ③ 감염관리 담당요원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연계 등 조치	○ (유증상자 관리) 증상발현 수험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 (관리대기실) 출입 관리 또는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대기실로 이동하여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등)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 (별도시험실)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시험 진행요원은 개인보호구 착용)을 별도로 배치하여 유증상자 시험 누락 방지	‘관리대기실’, ‘별도시험실’ 공간 마련을 통해 감염위험 최소화 및 유증상자의 시험응시 기회 제공
5	○ (시험 간격) 시험실 내 수험자 간 간격을 2m 확보(좌우앞뒤) 권장, 최소 1.5m 이상 유지하며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야외(예: 운동장)에서 시험 실시	○ (수험자 간격) 시험실 내 수험자 간 간격을 ①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②좌측 한칸 비우기 또는 ③칸막이 활용 또는 ④다른 수험생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 시험실 특성에 맞게 적용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현행화
6	○ (유증상자 발생)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별도 시험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 (유증상자 관리)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관리대기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의사가 있는 수험자의 경우 별도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 - 감염관리책임자(감독관)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확진자 발생 시 10일간 증상 자을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감염관리총괄은 관할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의료기관 방문 연계 등 조치 권고	유증상자 발생시의 조치사항 추가
6	3. 시험 종료 후 ○ (시험지 관리) 시험감독관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지(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채점 실시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꼼꼼하게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로(70% 에탄올) 손위생 실시, 답안지는 가능한 24시간 보관 후 채점	3. 시험 종료 후 ○ (시험지 관리) 시험감독관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지(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채점 실시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꼼꼼하게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로(70% 에탄올) 손위생 실시	시험종료 후 안내사항 문단구성 변경 및 ‘24시간 보관 후 채점’ 문구 삭제
6	4.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이 원칙	4. 면접시험 조치사항 ○ 면접시험은 가급적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을 권고	비대면 면접시험 원칙을 권고로 변경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8	※ 시험 주최기관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을 <u>시행하기로 결정</u> 했을 경우 시험장 준비를 위한 방역지침	1. 특별한 상황 ※ ‘특별한 상황’은 격리자등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일반 시험장 방역보다 더 철저한 시험방역이 요구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부가설명 추가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중복은 삭제
8		○ (적용범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국가시험 등} 국가 및 공공기관(국가 및 공공시험 운영 위탁기관)에서 채용, 자격검정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국가시험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에 해당하면서,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 * 시험 주최기관은 별도 시험실 준비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수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적용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 허용이 가능하며, 외출 허용 시 수험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붙임9 참조) - (외출 허용 대상)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격리자등*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 (외출 허용 방법) 보건소장은 시험목적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을 격리자등에게 전자적인 방법(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 * 격리자등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가능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개정에 따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추가

9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 외출 허용 요청 관련 시기별 준비사항 >

시험주최기관

- 방역관리 계획 수립
- 격리자등 시험응시 가능 공고
- 시험방역 마련
- 격리자등 외출허가 요청
(시험일 D-14보다 늦어질 경우, 외출허가 요청 기관과 협의 필요)

보건소

외출허용 통보

격리자등 수험자

격리사실 고지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시)

○ (시험 주최기관)

① 격리자등 시험 응시 가능 계획 공고 및 수험자 사전 알림 의무* 안내

- *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①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 ②시험 주최기관에 확진/격리 통보 사실 알림

② 보건소(또는 질병관리청)에 공문 등의 방법으로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최소 시험 2주전)

- * 외출 허용 요청시 시험 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 대상) 및 방역조치 포함(붙임 8의 예시 참조)

③ 보건소의 외출허가 확인 및 격리자들에게 외출 허용 알림(외출허가 없을 시 외출 허용 요청한 기관에 외출 허용 여부 확인)

- * 수험자를 통해 수험자 중 확진/격리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명단 파악

<시험 주최기관의 외출 허용 요청 기관 판단 기준의 수험자 단위>

수험자의 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외 시험**
요청 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필요시)	관할 보건소

* 수험자가 전국(5개 관할 보건소 이상)에 분포되어 있어 관할 보건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요청이 불가피한 경우

** 수험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관할 보건소를 특정하여 외출 허용 요청이 가능한 경우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를 시기별로 도식화함

‘시험 주최기관’, ‘보건소 담당자’, ‘격리자 등 수험자’ 각각이 외출 허용을 위한 절차 추가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10		○ (보건소 담당자) 외출 허용 수험자의 시험장 이동에 대해 사전 협의 ※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시험방역 관련 업무 분장(수험자 이동방법 협의, 이동동선 모니터링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보건소 승인) 시험 주취기관에서 격리자등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 방역조치 포함 시험개요 확인 및 전자직 방법(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외출 허용 - (질병청 승인)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취기관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격리자등 수험자) 외출 시 외출허용 시험 응시자임을 증명한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수 지참 ① 격리자등의 응시를 계획한 시험인지 주취기관의 공고 등을 통해 확인(아닐시, 격리자등은 시험 응시 불가) ②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보건소 담당자 및 시험 주취기관에 알림 ③ 관할 보건소의 문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여부 확인	‘시험 주취기관’, ‘보건소 담당자’, ‘격리자 등 수험자’ 각각이 외출 허용을 위한 절차 추가
9	1.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외 추가 필요 사항)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격리자등’으로 방역 조치 통합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10-11	① 관리체계 구성 ○ (수험자 관리) 관계기관(질병관리청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시험장 입실대상자 확인 및 상시 모니터링 ○ (시험장 구성) 일반 시험장과 장소가 분리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여 자가격리자와 일반 수험자의 건물과 동선을 가능한 달리 할 것 *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시험장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나 교실로 시험장을 마련하되, 동선을 분리해 사용	□ 시험 주최기관 사전 준비사항 ○ (수험자 관리) 수험자를 통해 시험실 입실대상자 확인 및 모니터링 - 국가시험 운영기관(위탁기관)은 시험 응시지원자 중 확진 수험자 여부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협조 요청 공문 시행 가능 * (필수) 성명, 생년월일 6자리, 연락처, (추가) 주소(상세주소) 포함 ○ (시험장 구성) 격리자들의 시험장은 별도 시험장, 시험실을 각각 마련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일반시험장 내 장소가 분리된 별도 시험실 가능 * 확진자, 격리자, 일반수험자가 겹치지 않도록 동선분리(시간, 장소 분리 등)가 가능하여야 하고, 별도 화장실 확보 - (입원치료 수험자) 의료기관 내 별도 건물 또는 별도 시험실 마련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병실 외 별도 시험실 가능 * 법에 따라 시험목적의 외출은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 * 외출 후 복귀 시 일반환자와 동선 분리 등 병원 관리지침 준수 ○ (물품 확보) 시험관리에 필요한 방역물품, 개인보호구* 및 필요시 비상상황 대비 시험장 밖 구급차 준비 *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티슈, 소독제, 필요시 의료폐기물 전용 봉기 등 ** 마스크(KF94 등급이상), 일회용 장갑, 필요시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비닐가운 포함)	확진자의 시험실을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한정에서 격리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실로 확대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조정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확진자, (확진자 외) 격리대상 수험자, 일반 수험자의 시험장소로 일반시험장이 가능. 다만 감염위험 노출 최소화를 위해 시험실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개정
10	② 시험 시행 관리 ○ (시험지 배부) 지정된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 및 답안지를 수험자에게 배부 * 감독관은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식사, 화장실 이용, 마스크 만지는 것 등 금지, 탈의 후 손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코·입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시험 당일 준수사항 ○ (시험지 배부) 수험자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자에게 직접 배부 * 감독관은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식사, 화장실 이용, 마스크 만지는 것 등 금지, 탈의 후 손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코·입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감염예방 최소화를 위해 격리자들의 수험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10	○ (시험 간격) 수험자 간 좌우 앞뒤 2m 이상 확보, 수험자는 KF94이상 마스크, 시험 감독관, 진행요원은 KF94등급 이상 마스크 포함 개인보호구 착용	○ (수험자 간격) 각 시험실 내 수험자 간 좌우 앞뒤 2m 이상 확보하여 자리를 배치 - 상시 마스크 착용 또는 시험실 내 칸막이 등 격벽을 설치한 경우는 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조정 가능	격리자들의 수험자 2m 간격 이외 간격 조정에 대한 내용 추가

쪽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11-12	○ (시험지 수거)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지는 시험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회송용 비닐봉투에 담은 후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회송용 상자에 포장 (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 *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만 가능하며, 소독티슈 사용 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시험지 수거) 수험자간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회송용 비닐봉투에 담은 후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회송용 상자에 포장(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 *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만 가능하며, 소독티슈 사용 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 사용	감염예방 최소화를 위해 격리자들의 수험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12	3. 격리대상 수험자의 이동시 방역 조치	4. 격리자들의 이동 시 방역 조치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등급이상 마스크 항상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등 - (자차) 격리자들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하며 운전자 및 격리자등 외 탑승자제 * 동거가족인 확진자와 격리자가 함께 이동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에 맞춰 방역조치 반영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 2.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예방 수칙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4.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7.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수험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8. 개인정보구 착의 및 탈의 방법	1.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6. 법적근거 주요 내용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주의사항 8.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예시) 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현행화, 6.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추가,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 수험자의 이동 시 주의사항 추가, 8. 시험응시 목적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예시)’ 추가, 9. 보건소에서 외출 허용 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시 안내사항(예시)’ 추가, 개인정보구 착의 및 탈의 삭제